

바. 수료생 관리 기준 마련(안 제8조)

-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사.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별표 3)

-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심사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견

다. 의견 보내실 곳

- 1) 소속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 3) 전화/팩스 : 044-201-3778, 3783 / 044-201-5574
- 4) 이메일 : lkh200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리뉴시스템(이종용)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명칭 :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짚과 결로 저감형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화한 AI 복합방수공법(AI-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 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폐유와 폐고무를 재생한 재생소재의 30% 이상 활용 및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및 에너지 저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해 제조한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셀과 에어로겔의 적용을 통해 단열성 확보로 실내공간의 결로방지가 가능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한 AI복합방수공법으로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물질 배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보하고, 고점착 비경화 특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 확보로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능성 외방수층 형성으로 실내 공간의 습도 상승 및 결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을 확보한 AI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재생 소재를 30% 이상 활용하고 VOCs 배제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통해 개발된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셀과 에어로겔(Aero-gel)의 적용을 통해 개발된 단열성이 확보된 결로 저감형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한 AI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2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재해 위험평가제와 바닷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연안관리법」(‘21.2.19.시행)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재해 위험평가제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

- 1) 연안재해 위험평가지 재해의 발생위치·빈도·크기 및 피해대상 현황 조사, 연안의 개발·이용전망 분석, 지역별 위험정도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2) 연안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추진계획·기관간 협력사항·연구개발, 정보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